

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94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12.

발 의 자 : 윤준병 · 이용우 · 문정복
이병진 · 이성윤 · 안호영
한병도 · 위성곤 · 서영교
허성무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상임 조합장에 한해서는 2차에 한해, 비상임인 조합장에 한해서는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이는 조합장 및 주요 임원의 장기간 연임으로 인해 친인척 채용 비리,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면서 조직의 변화와 쇄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마련된 규정임. 다만, 한 번에 한해 연임이 허용된 비상임 조합장에 대하여 상임 조합장과 동일한 연임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수산업협동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 권한의 분산을 위해 비상임 조합장의 경우에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 차례로 명확히 제한하려는 것임(안 제50조제1항).

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0조제1항 본문 중 “4년으로 하고”를 “다음 각 호와 같고”로, “하되”를 “하며”로, “비상임인 조합장은 한 번만 연임할 수 있고, 상임인 조합장은 두 번만”을 “조합장은 2차에 한하여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설립 당시의 조합장·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, 2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1. 조합장과 조합원인 이사: 4년
2. 제1호의 이사를 제외한 이사: 2년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연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출되는 비상임조합장부터 적용한다. 이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선출되어 개시되는 임기를 그 첫 번째 임기로 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0조(임원의 임기) ①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<u>4년으로 하고</u>,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<u>하되</u>, 비상임인 조합장은 한 번만 연임할 수 있고, 상임인 조합장은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. <u>다만, 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임기가 시작된 후 2년이 되는 때에 그 업무 실적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회의 의결로 남은 임기를 계속 채울지를 정한다.</u> <u><신 설></u> ② ~ ④ (생략)	제50조(임원의 임기) ① ----- -----<u>다음 각 호와</u> <u>같고</u>-----<u>하며</u> <u>조합장은 2차에 한하여</u>----- ----- -----<u>다</u> <u>만, 설립 당시의 조합장·이사</u> <u>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</u> <u>하되, 2년을 초과할 수 없다.</u> <u>1. 조합장과 조합원인 이사: 4년</u> <u>2. 제1호의 이사를 제외한 이사:</u> <u>2년</u> ② ~ ④ (현행과 같음)